

건설업 폐업 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

「건설산업기본법」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 폐업 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등록말소 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공고합니다.

2024. 4. 15.

강릉시



□ 건설업 등록말소 내역

업체명 (대표자)	소재지	업종 (등록번호)	사유	말소일자
세한개발공사 (김진*)	강릉시 남구길17번길 21 (포남동)	가스·난방공사업 (강릉-07-28-01)	사업 포기	2024.4.15.